

23. 학교에서 학생 인권의 보호를 위한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그렇다	25	11.6	11.6
	대체로 그렇다	125	58.1	58.1
	대체로 그렇지 않다	31	14.4	14.4
	전혀 그렇지 않다	4	1.9	1.9
	잘 모르겠다	30	14.0	14.0
	합계	215	100.0	100.0

24. 과거 교사 양성과정(대학)이나 임용 후 학생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대학에서 있었다	16	7.4	7.4
	임용후에는 있었다	21	9.8	9.8
	대학과 임용후 다 있었다	10	4.7	4.7
	전혀 없다	168	78.1	78.1
	합계	215	100.0	100.0

부록

1. 일본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2.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3.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
4. 아동인권관련 법
 - 1) 대한민국 헌법
 - 2) 세계인권선언
 -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4) 교육기본법
 - 5)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5.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많은 시민과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진 것이며, 이 조례의 내용은 '아동권리조례검토연락회의'와 '아동권리조례조사연구위원회'에서, 약 2년간 200회를 넘는 회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아동과 어른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을 하나의 인간(권리의 주체)으로서 존중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지키며, 아동이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위하여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나 이념을 정리한 전반부와 아동의 생활의 장에 따른 권리보장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보장의 방법을 규정한 후반부로 구성된다. 21세기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들이 생기 있게 자라며, 자신과 타인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가와사키시 ·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前文

아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이다. 아동은 매우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며,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며, 자신이 그 자체로서 소중하기를 원한다.

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확보, 차별의 금지, 아동의 의견의 존중 등의 국제적인 원칙 하에, 그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된다. 아동에 있어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풍부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 등을 통하여 아동은 권리의 인식을 깊게 하고, 권리를 실현할 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힘이나 책임 등을 체화 시킬 수 있다. 또

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상호 존중되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어른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파트너이다. 아동은 현재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미래社会의 담당자로서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의 형성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도 사회는 아동에게 열려야 한다.

아동은 동시대를 사는 지구시민으로서 국내외의 아동과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깊게 하고, 공생과 평화를 염원하며, 자연을 지키고, 도시에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결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시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생을 진전시키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들은 아동 최우선 등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아동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평성원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이념에 기반 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진전시킬 것을 선언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시 등의 책무,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가정, 보육·학교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드는 용어의 정의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아동 : 시민을 비롯하여 시와 관계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 기타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양육·교육시설: 아동복지법(소화 22년 법률 제164호)에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학교교육법(소화 22년 법률 제26호)에 규정한 학교, 專修학교, 각종학교 기타의 시설 중, 아동이 양육되고, 배우기 위하여 입소하고, 通所하는 시설
3. 부모에 대신하는 보호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수양부모(里親) 또는 보호수탁자 기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자

제3조(책무) ① 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場合에 있어서,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시와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양육·교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및 직원(이하 [시설 관계자]라고 한다) 가운데, 시 이외의 시설관계자는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양육하는 아동 및 고용된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에의 요청) 시는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시외에 있어서도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제5조(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 ① 시민들 사이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이고 깊게 하기 위하여,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을 둔다.

②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은 11월 20일로 한다.

③ 시는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홍보) 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그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 등) ① 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가운데,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학습 등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시설관계자 및 의사, 保健婦 등 아동의 권리의 보장과 직무상 관계된 자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좀더 깊어지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는 아동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자주적인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시민활동에의 지원) 시는 아동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에 대하여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과 함께,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제휴를 도모해야 한다.

제2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제9조(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이 장에 규정하는 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자라고 배우고 생활하기 위해 특히 귀중한 것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아동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하여 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생명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것
- (2)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양육되는 것
- (3)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
- (4)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받지 않으며, 방치되지 않는 것
- (5) 건강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며, 성장에 어울리는 생활이 가능한 것
- (6)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제11조(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아동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것
- (2)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
- (3) 비림을 침해당하지 않는 것
- (4)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정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것
- (5) 아동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을 받지 않는 것
- (6)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휴식하는 것, 여가를 가지는 것

제12조(자신을 지키고, 또한 지켜질 권리) 아동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모든 권리의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것
- (2)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받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 (3)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담의 기회가 상담에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확보되는 것
- (4)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전술하는 것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5)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 그 회복에 적절한 분위기의 장소가 주어지는 것

제13조(자신을 풍부하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권리) 아동은 그 성장에 따라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노는 것
- (2) 배우는 것
- (3)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는 것
- (4) 정보를 얻는 것
- (5)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14조(스스로 결정할 권리) 아동은 자신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에 관한 것을 연령과 성숙도에 맞게 결정하는 것
- (2)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할 때에, 적절한 지원 및 조언을 받는 것
- (3)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제15조(참가할 권리) 아동은 참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을 표현하는 것
- (2)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3) 동료를 만들고, 동료와 모이는 것
- (4) 참가를 할 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제16조(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 아동은 그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아동 또는 그 가족의 국적,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기타의 처한 상황을 원인 또는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 (2) 前號의 처한 상황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운데에 共生할 수 있는 것
- (3) 장애가 있는 아동의 존엄을 지키고, 자립하며,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가가 도모되는 것
- (4) 국적, 민족, 언어 등에 있어서 소수의 입장에 있는 아동이 자신의 문화 등을 향유하고, 학습하며, 표현하는 것이 존중되는 것
- (5)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 의견 표명의 방법, 참가의 방법 등에 대한 공부 및 배려가 주어지는 것

제3장 가정, 양육·교육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1절 가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17조(부모 등에 의한 아동의 권리의 보장) ①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는, 그 양육하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자이다.

②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그 양육하는 아동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모 등은 양육·학교시설 및 보건, 의료, 아동복지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동 본인의 정보를 얻는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양육의 지원) ① 부모 등은 그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는 부모 등이 그 아동의 양육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9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 ① 시는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구제 및 그 회복에 있어서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동의 심신상황을 특히 배려해야 한다.

③ 시는 학대의 조기발견 및 학대를 받은 아동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회복을 위하여 관계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양육·교육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21조(양육·교육환경의 정비 등) ① 양육·교육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그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도록 양육·교육시설의 직원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前項의 환경의 정비에 있어서는 그 아동의 부모 등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과 제휴를 도모함과 함께 양육·교육시설의 직원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양육·교육시설의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는 것과 함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부모 등 지역의 주민과의 제휴를 도모하고 안전관리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아동의 자주적인 활동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그 시설 및 설비의 정비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제23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등) ① 시설관계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④ 시설 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이지메의 방지 등) ①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의 방지를 위해 아동들을 상대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이지메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설설치관리자는 이지메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학교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시설관계자는 이지메를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에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이지메를 행한 아동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는 바탕 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 등) ①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前項의 문서 중 아동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작성에 있어서 아동 본인 또는 그 부모 등의 의견을 구하는 등 공정한 문서의 작성에 대한 배려가 행해져야 한다.

③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는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아동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전항의 정보는 양육·학교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의 문서 및 제3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아동 본인에게 제시되거나 제공되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양육·학교 시설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아동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26조(아동 성장의 장으로서의 지역) 지역은 아동 성장의 장이고, 가정, 양육·교육시설, 문화, 스포츠 시설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장인 것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고 아동의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아동의 居場所) ① 아동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인 것, 휴식하여 자신을 되찾는 것, 자유롭게 놀고 활동하는 것, 안심하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들이 가능한 장소(이하 居場所라 한다.)가 귀중한 것을 고려하여 시는 居場所에 대한 사고방식을 보급하고 居場所의 확보 및 그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아동에 대한 거장소의 제공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관계 단

체와의 제휴를 도모하고,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활동)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활동은 아동이 풍부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아동의 참가(제29조~제34조)

제29조(아동의 참가의 촉진) 시는 아동이 시정 등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양육·교육시설 기타 활동의 거점으로 되는 장에서 그 운영 등에 대하여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또는 지역에 있어서 문화, 스포츠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 시책에 있어서 보장하는 것이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참가를 촉진하고, 그 방책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0조(아동 회의)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가와사키 시 아동회의(이하 [아동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아동회의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한다.

③ 아동회의는 그 주체인 아동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아동의 총의로서의 의견 등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등을 존중해야 한다.

⑤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아동회의에 모든 아동의 참가가 촉진되고, 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참가활동의 거점 만들기) 시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들만이 자유롭게 안심하여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자치적 활동의 장려)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자치적인 활동에 의한 아동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양육·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육·학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행하고, 그들 및 양육·교육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양육·학교시설을 강화하고 상호 조화되기 위하여 정

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3조(좀더 열린 양육·학교시설)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 부모, 기타 지역주민에게 좀더 열린 양육·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육·학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행하고, 그들 및 양육·교육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양육·학교시설을 강화하고 상호 조화되기 위하여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아동의 의견) 시는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아동에 참가 등의 방법 등에 대하여 배려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상담 및 구제(제35조)

제35조(상담 및 구제) ①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 계획(제36조·제37조)

제36조(행동계획)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에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 하는 것

- (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 (3) 부모 등, 시설 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하나의 동을 지원하는 것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제38조~제40조)

제38조(권리위원회) ①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⑦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⑨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① 권리위원회는 前條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④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⑤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⑥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해야 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답신 및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 해야 한다.

제8장 雜則(제41조)

제41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기타 집행 기관이 정한다.

부록 2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차별은 안 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 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제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다.

제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잊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 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 사용할 권리는 없다.

부록 3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

*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김.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셔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

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 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 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부록 4

인권 관련 법규

1. 대한민국 헌법
2. 세계인권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4. 교육기본법
5.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 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

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

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 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 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 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

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서 론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유념하며,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유년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가족은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유엔헌장을 통해 선언한 이상주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 23조와 제24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외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집행을 위한 유엔 최소표준규정(베이징규정) 및 비상시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미리 성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조

-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을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서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 특히 안전, 건강, 직원의 숫자, 직원의 적격성 및 충분한 감독 - 을 지켜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아동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하되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해당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이별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처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로부터 헤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부모와의 이별이 국가에 의한 한쪽 부모 혹은 양부모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때문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해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처리

로 인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출국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제약을 받으며,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권리와 일치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未)귀환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해당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에의 가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

가 :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

나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윤리상 필요한 경우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보건, 윤리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윤리,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에 대하여 독단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국내외의 다양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윤리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와 국내외의 소식통에 의한 정보와 자료의 제작, 교환 및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이 언어상 겪는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양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과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러 방법으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적절히

감안하여 조치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관련자가 필요한 상담을 통해 입양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동의했음을 전제로, 자격이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을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이 맡을 수 없다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에게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조치와 기준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위탁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해당되는 경우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내 입양 위탁이 유자격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합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어떠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 당사국은 정신신체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며 적극적 사회 참여를 조장하는 등 그들이 마음껏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 당사국은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장애인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장애아동의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을 위해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예방의학,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분야에 대해 적합한 정보를 외국과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교류는 이 분야의 치료분야에 대한 해당국의 대처능력과 기술 및 경험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아동의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에 관한 정보의 교류가 포함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 24 조

-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유익성, 위생 및 환경 위생 시설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

-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실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 26 조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정능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과 재정상황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 당사국은 국가적인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

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동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정기 출석을 권장하고 중퇴율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한다.

나. 인권과 기본 자유 및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을 존중한다.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화를 존중한다.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남녀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

하도록 준비시킨다.

마. 자연환경을 존중한다.

2.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따른다.

제 30 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 혹은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민족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차취,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일,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과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수립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국내적으로, 양국간, 다국간으로 취해야 한다.

- 가. 아동을 불법적·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불법적·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불법적 또는 전횡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

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기타 적절한 구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법원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당국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자유박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아동관련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이 법이 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연장자 순으로 징집해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어떠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혐의 혹은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취한다.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아동이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하도록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각을 촉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아동을 처리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를 했거나 안 했다

는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독립적이고 공평한 소관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위하여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자체 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판결시에는 법률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반대편 증인을 조사하고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 받도록 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조치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 사법기관에 위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충분히 존중받도록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완전히 존중되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

4. 아동을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 및 감호소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활용한다.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법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

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3 조

1. 이 협약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분포와 국가의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위하여 임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4.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첫 번째 선거는 이 협약 발효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으로 임명한 당사국의 국가명과 함께 알파벳순으로 임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 참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투표에서 최대득표와 절대득표를 얻은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임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를 5인 위원의 명단은 첫 번째 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되 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유엔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타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

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되나 이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총회의 승인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매 5년마다

2.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포괄적인 이해를 돋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본 조 제1항 나호에 따라서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 45 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심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자격이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

에 속하는 분야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보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자격이 있는 기구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와 관계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도록 유엔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국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교육기본법

제 50 조

1. 어떤 당사국을 막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모든 당사국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될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게 되면, 이에 찬성한 당사국과 기존의 협약서 및 이전의 개정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 51 조

1. 유엔사무총장은 각국이 이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시 작성한 유보조항 문서를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위배되는 유보조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사항의 철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서 발송을 통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 52 조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의 실효(失效)를 통고할 수 있다. 실효는 사무총장이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 53 조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되었다.

제 54 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된 이 협약서의 원본은 모두 동등한 정본으로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의 증인으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사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38호]

제2장 교육당사자

제 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⑤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등의 설립 경영자) ①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 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 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 관리한다.

③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법무부령제135호 제정 1969. 07. 21]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 검찰국 인권옹호과(이하 "인권옹호과"라 한다)와 각지방 검찰청 및 동 지청에서 인권침해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와 법률 상담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집무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상담소의 설치) ① 각 지방검찰청과 동 지청에는 사건에 대한정보수집 조사 및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하 "인권상담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검사장과 동 지청 지청장은 인권상담소에 검사 1인과 서기 1인을 순번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사건부) 인권옹호과의 인권상담소에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사건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의 개시) 사건의 조사는 서면이나 구술에 의한 국민의 신고, 관계관서의 통보 또는 신문방송 기타보도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개시한다.

제5조(신고조서등) ① 사건에 대한 구두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지를 기록한 신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관서로부터 사건에 대한 구두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지를 기록한 통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문방송 기타 보도에 의하여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녹취한 정보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로부터 사건의 전말, 침해현황 기타의 참고 사항을 청취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녹취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조서는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 오기의 유무를 물은 다음 오기가 없음을 진술할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이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⑥ 사건이 발생한 현장 등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재한 실황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전항의 조사 이외의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한 사건의 처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호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에 해당함이 명백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옹호과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상신 하여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2. 인권침해자 또는 인권침해자를 지도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한다.

3. 관계관서에 대하여 침해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한다.

4.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조언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조를 한다.

5. 관계자에 대한 권유, 알선 기타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다.

제7조(조치유예)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침해자의 성격, 연령, 환경침해의 경증 및 정상침해후의 정황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전조 각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치 유예를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무혐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무혐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중지) 사건관계자의 소재불명 기타 조사를 계속할 수 없을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사중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사정이 소멸한 때에는 조사를 다시 개시한다.

제10조(송부)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해 사건을 다른 관서 기타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송부의 결정을 하고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해당관서 기타의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사건의 수리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동 지청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사건(이하 "특별침해사건"이라 한다)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수반하는 침해.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2. 중대한 혹사 학대 또는 사적 제재
3. 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침해
4. 기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침해

제12조(사건처리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동 지청 지청장은 특별사건을 처리하거나 특별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법률상담) ① 인권옹호과와 인권상담소의 직원은 국민의 법률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담으로서 수리한 사건이 다른 관서 기타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서 기타의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으로서 수리한 사건이 입법 기타 중앙관서의 시책에 참고가 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월례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동 지청 지청장은 매월 인권침해사건 및 법률상담사건의 수리 및 처리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5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I.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 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시 안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 6. 예시안의 ‘목적’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 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 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II 학교생활규정(안) 구체적 조항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의 목적

<예시안>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 학생들이 21세기 주역으로서 학교, 지역사회, 국가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2)

<평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하게 하는데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제2조)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예시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이익과 생존발달을 보장하기보다 사회질서유지에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줌. 위의 법이념에 맞고 오늘의 학생인권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생활지도협의회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4②)
- 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조회 시 병행(§7)
- 구성은 교감, 생활지도부장...해당 학년부장(학부모대표:학교선택사항)으로 함(§8)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한 점과 동 예시안 제2조(목적) 규정에서 그 적용범위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 및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 가정, 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3. 폭력 예방 수립계획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계획을 수립, 별도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심의 후 실행(§9)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치료/가해학생의 치료기관 지정

<평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부모의 의무로써 아동에 대한 폭행·폭언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알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임.

- 따라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교사·학부모·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바람.

4. 여가활동

<예시안>

-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함(§18의1)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며, 이용규칙 준수(§18의 2)
- 특별실 담당학생 두어 관리 및 청소(§18의3)
- 생활지도위원 등은 교내 비행발생 지역 수시 순찰(§18의4)
- 타인의 휴식 방해하는 소란 활동 자제(§18의5)

<평가>

-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심신과 정서를 성장·발달시키며,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임.
- 법적 근거로는 현법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에서 찾을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아동의 발달 및 행복추구를 위하여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과 관련된 조항을 학교생활규정에 담아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의 현장이 되길 바람.
- 여가활동과 관련, 학교측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가하여 능력 배양의 기회가 되는 교지와 학교신문 발행 등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지원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

5. 교내생활규정 중 용의사항

<예시안>

- 가방은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19①5)
- 무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19①8)

<평가>

- ‘학생신분에 맞는’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임. 또한, 두발상태 불량으로 적시한 무스·젤 등을 사용하여 ‘두발형태의 변형을 가지지 않은 범위 내’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자의적 범점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 예시하여야 할 것임.

6. 교외생활규정 중 보호자의 의무

<예시안>

- 학생의 올바른 교외생활 지도, 심각한 이상발생 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중·고등예시안§31)
- 학부모·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비행 방지토록 선도 (초등예시안§45)

<평가>

- 학생을 잠재적 문제아 또는 비행아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임. 따라서 ‘비행 방지토록 선도’라는 규정보다는 ‘건강한 교외생활을 하도록 유도’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7. 초등학교예시안의 보호자 책임

<예시안>

- 학생의 교·내외생활로 타인이나 학교에 손해발생 시 보호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 및 도의적 사죄(§49)

<평가>

- 동 규정은 민법 제755조에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임.
- 특히 법과 각종 규정은 윤리·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기보다 학생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것을 규정함이 바람직함.

8. 정보통신

<예시안>

-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사용, 타인의 인권 존중, 건전정보 제공, 음란·폭력물 접속 금지, 타인 정보보호, 지적 재산권 존중, 정해진 이용시간 준수 등 (§31)
-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 교내 첨단기자재 관리 철저(§32)

<평가>

- 사이버공간에서의 예절중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필요한 규정이지만, 학생에게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어떻게 실현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9. 학생회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음(§35)
- 학생회의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38)

<평가>

- 학생회회원 역시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음’의 규정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 바,
-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0. 금지활동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 가입금지, 정치에 관한 활동 금지(§35)

<평가>

- 인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질서와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 됨. 또한, 학생인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

-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하여야 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임. 학생은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하여 동 규정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11. 효력정지

<예시안>

- 학생회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 (§37)

<평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996년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12. 학생체벌

<예시안>

- 교사의 감정에 치우친 체벌 금지, 체벌기준에 따라야 함
- 교사는 체벌 시 학생에게 사유 인지시켜야 함
- 체벌은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를 동반하여 실시
- 체벌 전 교사의 학생 건강상태 점검의무, 이상 있을 때 연기가 가능
- 체벌 도구는 지름 1.5cm내외, 길이 60cm이하 나무, 직선형
- 체벌부위는 둔부,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
-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해당 학생에 상해 금지
- 해당 학생은 대체 벌 요구 가능, 해당 교사는 학교장 허가 얻어 보호자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 협의(§54)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 7항은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 법률상 체벌권한은 학교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임.

- 대법원은 체벌을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정도·방법·부위를 제시함. 정당한 목적은 훈육·수업진행·교육상 필요, 훈계 등을 예를 들었고, 정당한 체벌 정도와 방법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객관성을 지닌 정도와 방법이라고 했으며, 정당한 체벌 부위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 안전한 신체부위를 말한다고 정의함.

- 그러나,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는 체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

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어야 함.

-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교육벌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교육벌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13. 현장실습 준수사항

<예시안>

-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고,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규정. (실업고예시안 §30)

<평가>

- 위 규정은 기업체와의 계약서 등에 규정해야 할 내용이며, 학교생활규정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할 것임. 학생에게 현장실습 중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교사 및 학교당국에게 현장실습대상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분석을 할 것과 실습 중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안)이 중·고등학교생활규정(안)과 내용이 같고, 다만 위 조항만 달리 규정한 것은 실업교육이 주변부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증임. 실업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알맞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실업고 학생들은 고학력사회 노동경시의 풍조 속에 소외되는 경향이 많으며, 학교를 통해 생존·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직업교육은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실업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은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면서 성장·발달해야 함.

- 특히 실업고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진지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실업과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교육동기를 일깨우고, 희망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함.

14. 징계의 방법

<예시안>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함.
(§82)

<평가>

- 징계의 방법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회 봉사하도록 명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원봉사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징계의 방식은 징계대상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생활에서의 소양 교육 등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15. 개정방법

<예시안>

◦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 사항(§48)
- 회칙제정 및 개정, 조직 및 편성, 예산·결산·감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회 회칙 개정은 대의원 또는 집행위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 심의 거쳐 대의원 회에 회부(§49)
◦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교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일정 수 교원 찬성으로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어야 함(§92)

<평가>

-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학생회 관련 규정에는 이 사항이 누락되는 등 비체계적임.

- 생활지도협의회는 지도기관이 되어 일상적인 지도·지원을 해야 하고, 학생회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해야 할 것임.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미칠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현실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III. 교육부 예시안의 평가기준

○ 유엔아동권리협약

가. 내용

(1)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됨. 전문은 유엔현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2) 제1부(제1조 내지 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체약국의 아동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 내지 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 내지 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평가원칙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①아동최선이익, ②생존·발달, ③차별금지, ④아동의견존중 원칙 및 각 권리보장 여부

(1)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그 활동이 어떤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 이는 주로 아동의 이익과 부모들의 사생활의 이익 또는 국가당국의 편의 등과 충돌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최선의 이익이 불확정개념이기는 하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2) 동 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은 생명권을 가지며, 당사국은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

과 발달을 보장할 것을 규정. 이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성격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임.

(3) 동 협약 제2조에서 국가는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함.

(4) 동 협약 제12조에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 이는 아동의견존중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함에 있어 아동자신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임.

○ 헌법의 어린이·청소년 권리관련 조항 및 기타 어린이·청소년관련법

2002. 9. 9

국가인권위원회 법령·정책권고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권고 및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통보

요약문

2002년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뒤 2002년 9월 9일 위원회법 제25조에 의거, 학교생활규정은 예시안이기는 하나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이 예시안이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안」 또는 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과 체벌 허용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체벌이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차별적 태도보다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공동체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해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두어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 운영”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

진다'고 규정한 실업고 예시안에 대해서도 "물적 손해에 대한 학생의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학교 당국에게 철저한 정보수집과 학생의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1월 19일 학교 내 체벌금지 등 우리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인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개정 권고에 대하여 '교직 단체, 관련 시민단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좀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임을 들어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